

【논문 요약】

국제우주특허법 제정과 국내벤처우주기업 육성

황 의산

I. 개관

우주조약의 대부분은 우주에 관한 유엔조약과 국제조약으로 알려진 5개의 UN 우주조약 및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우주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국제조약은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와 1998년부터 민간 ISS의 협력과 관련된 미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우주조약은 달을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사용범위, 탐험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달조약은 우주조약에서 규정하는 천연자원의 사용 및 달 탐험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달조약은 최근에 채택된 국제우주조약이다.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달조약은 우주공간이 인류의 일반적인 유산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우주조약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및 인디아를 포함하는 주요 우주비용을 부담하는 국가들에 의하여 서명·인준되었다. 다른 한편, 달조약의 서명국은 단지 11개 국가가 본 조약에 인준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동 조약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우주비용을 부담하는 주요 국가들이 서명하지 않았고, 다른 5개 국가들도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달조약은 1979년 유엔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나, 1984년 세계의 15개국과 오스트리아가 협정에 인준 또는 서명을 했지만, 그들의 권한에 대하여 논쟁이 많게 되었다. 속지주의적인 특허법과 우주조약의 쟁점으로 개별국의 특허법은 그 국가의 지역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다.

법적으로 우주공간에서는 경계가 없을지라도, 지구를 초월하는 우주공간은 최저가능궤도(80~120Km)이내의 대기권이 그 경계로 알려졌다. 우주공간의 정의와 관련하여 속지주의적인 특허권과 다른 관할권이 우주공간에 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확대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어떤 학자들은 우주조약의 제8조에 따라, 우주공간의 활용은 어떠한 국가가 등록된 항공기 탑승관할권 이내로 운영되도록 그들 국가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주조약 또는 달조약의 어디에도 이러한 관할권, 또는, 국제우주특허권과 같은 재산권의 쟁점을 언급하는 명백한 규정은 없다. 달조약 제8조는 그 활동이 평화적인 목적인 경우에 다른 국가들의 우주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한, 달의 어느 곳에서 어떠한 우주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달조약 제15조는 달의 어느 곳에서 어떠한 국가들도 그들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12조에서 모든 서명국들은 그들의 우주정거장,

우주활동을 위한 장치 등에서 다른 국가들이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제27조에서 특허권은 발명 장소 또는 기술 영역에 관하여 차별 없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공간은 대기권 하부 층에서 발명한 일반특허발명물품의 특허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정의하는 우주조약으로 인하여, 우주특허발명품의 장소를 근거로 차별화된다. 파리협정 제5조의 법 문언 구조와는 달리, 우주특허발명물품은 특허권침해의 예외 규정에 따른 제5조의 의미 내에서 선박, 항공기 등의 일반특허물품과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II. 문제점

우선, 현행 우주공간의 우주특허발명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허권의 일부로 역할을 하는 현행 우주특허발명은 우주공간에서 발명에 대한 지속성을 위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의 국제우주특허권 체계가 우주공간에서 재산권으로 정의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민간 벤처우주기업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벤처우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잠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그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로 혁신의지가 부족한 정부조직체제로 인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해야 할 때, 그러한 조직으로는 충분한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정부 조직체계는 그들과 관련한 사람들이 소유한 벤처우주기업들의 관심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현행 우주조약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학자들은 우주공간에서 국제특허체계가 현재로서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은 우주개발사업에 방해가 되는 현행 조약과 협정으로 인하여 향후 민간벤처우주기업들이 이미 우주공간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재산권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에 논쟁한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영유권이 없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우주공간의 비용을 부담하는 민간벤처우주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자들은 민간벤처우주기업이 우주공간의 연구개발사업과 운영에서 그들의 투자가 회수될 때까지 현행의 불안정성과 고비용, 우주여행의 기술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은 상업적인 우주개발사업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우주공간에서의 국제우주특허법은 벤처우주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멀지 않아 우주공간의 상업화를 위하여 중요한 걸림돌들이 제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주공간의 우주물품의 특허권은 철도, 항공기 또는 자동차 등과 같이 우주운송수단의 급속한 발전으로 점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우주특허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떠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동일한 법규체제로 계속되는 경화에 대한 시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제특허권의 부여와 그 이익에 대한

활용은 벤처우주기업들의 연구개발의 결과가 회수될 수 있는 확신을 그들에게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UN우주조약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상호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UN우주조약과 WIPO가 우주공간에서의 우주특허법의 제정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규정의 결핍과 견해차이 등이 서로 충돌로 남게 하고, 우주공간의 혁신을 위한 투자 촉진책이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일반적으로 WIPO의 사적인 특허권보호 및 속지주의와 UN우주조약에서의 공중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특허권침해 등이 문제되고 있다. 수많은 사적인 특허권과 우주조약에서의 공중의 권리는 우주공간에서 사용되고 이루어지는 우주특허발명에 따른 수많은 권리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을 입증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의 이익을 위한 우주공간의 사용과 연구개발, 어느 한 국가에 의하여 우주공간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주조약과 달조약의 기본원칙이었다. 하지만, 우주특허권보호와 실시는 우주공간에서 우주조약의 기본원칙들과는 관계가 없다. 우주특허권의 사적인 보호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지식재산권에 관한 TRIPS의 전문원칙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Ⅲ. 개선방안

우선, 우주공간에서 국제우주특허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우주조약과 달조약의 현행 법체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쟁점은 특허를 초월하여, 현행 국제우주특허법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우주조약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적인 현실성에 알맞게, 현재 상황과 더 긴밀하게 우주조약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의 예는 우주조약의 규정을 다음과 비슷하게 개정하는 것이다. “우주연구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사용은 TRIPS 규정에 따른다.” 또 다른 방법은 ‘일반유산 원칙’의 규정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주조약의 제2조를 다음과 비슷하게 개정하는 것이다. “확보된 우주물품의 특허권은 개별 국가들에게 수용(appropriation)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일반유산 원칙’ 규정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해결책은 우주공간에서 특허로 인식될 수 있는 국제우주특허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우주공간에서 특허보호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현행 특허조약을 개정하거나 우주특허조약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주공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략 해발 100km의 상공을 정의하는 우주공간에서 우주특허발명품의 모든 사용을 서명국 간에 우주특허권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해결책은 우주공간과 접목시키는 국제우주특허법으로 특허 풀을 촉진 시키는 것이다. 계약된 우주연구개발의 대부분은 우주특허권이 사법적인 기구가 아닌 정부와 계약자 간에 협정을 통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주공간에서 이행되는 우주기술에 대하여 정부로부터의 통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정부는 우주공간의 상업화와 사유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감시를 덜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벤처우주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압박하지 말고, 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자제하고, 벤처우주기업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균형 있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IV. 시사점

우선,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의 성과물인 우주물품의 특허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물론, 이 문제는 개별 국가의 특허법에서 언급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주특허물품은 특허권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 그들은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주개발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벤처우주기업을 비롯한 사업주체자들에게 우주특허물품의 ‘특허권보호’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특허물품에 대한 우주특허법의 명백한 법문언의 부재는 국내는 물론, 국제우주개발사업에도 걸림돌이 되어, 그들에게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한 장애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주특허법에서 특허권소진원칙에 관한 국내특허법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 규범은 WIPO차원에서 국제우주특허법으로 보호되는 우주특허물품의 최초판매에 대한 국제소진의 법리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또, 우리입법부는 국내우주특허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국내우주특허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인하여 향후, 국제우주특허법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벤처우주기업들이 우주공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잠재적인 경쟁력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우주개발사업은 다른 외국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대부분 정부주도의 사업이었으며, 최근 들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통신 및 방송위성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우주개발사업의 유년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박하며, 정부사업의 추진 시에도 정부가 지원한 예산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유일한 항공우주분야의 대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을 2011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의 견해로는, 현재 추진 중인 KAI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우주강국인 선진국들의 선례를 볼 때, 국내 항공기산업 및 우주개발사업 공히 미성숙 단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21년 우주발사체의 독자개발이 성공발사가 완료 될 때 까지, 현행 체제로 정부와 KAI 그리고 민간우주기업들이 상생의 협력체제로 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